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4명(6급 14명, 7급 20명, 8급 13명, 9급 17명) 및 노동위원회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성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3.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1. 의결주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노동위원회에 송무 수행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에 필요한 인력 68명(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4명) 중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1명(7급 1명)은 감축하고, 8명(5급 1명, 6급 4명, 7급 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근로감독정책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근로감독기획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근로감독정책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중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은 감축하며, 7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할

- 1 -

대통령령 제 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

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제42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18”을 “624”로 하고, 일반직 계 “611”을 “61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87”을 “59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7,087”을 “7,088”로 하고, 일반직 계 “7,086”을 “7,0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057”을 “7,058”로 한다.

별표 2의2를 신설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100명
2)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452명
3)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3명
4)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40명
5)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99명

6)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14명
7)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85명
8)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9)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3명
10)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지방고용노동관서)	30명
11)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1명
12) 고용센터 초기상담(지방고용노동관서)	22명
13)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06명
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제4조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정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2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7명(5급 1명, 6급 15명, 7급 21명, 8급 13명, 9급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

[별표 2의2]

<u>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u> (대통령령 제000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617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5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4
일반직 계	610
고위공무원단	1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이하	586
전문경력관	4

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노동정책실) ①·② (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u><신설></u>	제11조(노동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6. (현행과 같음) <u>16의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u>
<u><신설></u>	<u>16의3. 「근로기준법」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u>
17. ~ 30. (생략) 제42조(근로감독정책단) 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3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근로감독정책단을 둔다. ② 근로감독정책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17. ~ 30. (현행과 같음) <u><삭제></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18	624	+6
·	·	·	
·	·	·	
일반직 계	611	617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587	593	+6
·	·	·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7,087	7,088	+1
·	·	·	
·	·	·	
일반직 계	7,086	7,087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7,057	7,058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2